##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2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박정하·김종양·이만희

이인선 · 신성범 · 한지아

박성민 · 신동욱 · 서명옥

김장겸 • 조은희 • 박대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u>2025년</u>	<u>2030년</u>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	
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